

[붙임3]

2013년도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편성지침

- ◆ 「2013년도 예산편성기준」은 센터별 예산편성의 통일성을 기하고,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임
- ◆ 각 센터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성과 지향적으로 예산편성

1. 운영비

- 센터 운영비(인건비 포함)
 - 운영비는 총 예산의 35% 이내로 편성
 - 초과근무수당은 월 67시간 이내(기본 10시간 포함), 연가보상비는 직원별 총 연가일수의 50% 이내로 계상·편성
 - 일용직 및 연구참여인력 임금
 - 일용직 : '13년도 정부노임단가의 보통인부 기준적용
 - 연구참여인력 : '13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
 - ※ 일용직 및 연구참여인력 임금기준 별첨
- 회의수당 : 2시간 이내 10만원,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만원추가 지급
- 강사수당
 - 대학 학장급 또는 공무원 국장급 이상 : 시간당 20만원이내
 - 교수 등 기타 : 시간당 15만원이내

2. 사업비

- 직접사업비는 총 예산의 **56%** 내외로 지역적 특성, 2012년도 예산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편성

(연구사업)

- 지역환경 개선 및 기업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과제 선정·추진
 - 지역내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**실용화 기술개발** 사업 중점 추진
- ‘**센터공동연구사업비**’를 센터별로 **최소 3천만원 이상** 편성
 - 공동환경기술개발, 녹조대책 등 권역별·수계별 환경현안 공동연구, 영세 사회복지시설(노인정, 어린이집, 고아원 등) 환경개선 연구 등
 - ※ 센터 공동연구사업 선정, 사업총괄 및 수행센터 선정, 사업수행방법 등 세부사항은 센터장 정례회의를 통하여 결정
-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**정책과제** 및 **단순 조사연구** 과제는 **가급적 지양**

(기업환경지원)

- 영세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사업(환특)과 최대한 연계하여 실시
 - 환특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비(수당, 회의실 임차비, 식대 등), 현장실사 흠닥터 수당 및 여비, 사업담당자 여비, 실험분석비 등으로 집행

(환경교육)

- 기업체, 공무원, 교사, 대학생, 일반시민(시민단체 포함)을 대상으로 환경전문교육(20시간 이상) 중점 추진
- ※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환경소양교육 폐지(단, 수탁사업 범위내에서 수행 가능)

(녹색성장포럼 운영 및 홍보사업) 가급적 최소화

< '13년 센터 예산편성(안) 총괄 >

항 목		편성 비율(%)		비고
		2012 실적	2013	
총 계		100	100	
운영비	계	34.1	35.0 이내	
	인건비	23.5	-	
	기본경비	10.6	-	
직접 사업비	계	56.4	56.0 내외	◦ 지역적 특성, 2012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직접사업비를 편성
	연구사업	42.8	-	
	기업환경지원사업	6.1	-	
	환경교육·홍보	7.3	-	
	녹색성장포럼 운영	0.2	-	
간접사업비		8.3	8.0 내외	◦ 연합회 회비 등
예비비 및 자립적립금		1.2	1.0 내외	

※ '12년 실적은 18 센터 예산집행 실적의 평균치임

3. 기타 행정사항

○ 사업 조기집행 권고

- 지역발전사업 평가일정에 맞추어 수요자만족도조사 조기시행, 지역발전사업 평가관련 센터 추진실적자료 조기제출('13.11월까지)

※ 지역발전위원회에서 '12년도 평가부터 평가기준에 추진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및 지정서식 사용에 가산점 10점 부여

○ 현물지원금 예산 편성

- 사무공간, 관리비, 분석장비 등의 현물지원은 과도한 금액 계상을 지양하고 제공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수준으로 편성

참고자료 : 일용직 및 연구 참여인력 임금기준

참고자료	일용직 및 연구참여인력 임금기준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사무보조 일용직 임금기준

(단위 : 원/인·일)

구분	고졸 이상	비고
일 임금	81,443 이하	※ 산정기준 : 2013 정부노임단가표 중 보통인부 기준적용(2013년 상반기)

연구참여인력 임금기준

(단위 : 원/인·월)

구분	학사이상 (보조원)	석사 이상 (연구보조원)	박사 이상 (연구원)	박사 이상 (책임연구원)
일 단가	1,145,653	1,527,485	2,285,056	2,980,044

※ 산정기준 : 2013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